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827호) 공포 알림

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827호)이 2026.11.10.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마약류 유출 방지를 위한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의무 강화
- 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마약류 처분 승인 권한 위임 사항 명확화
-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및 지정범위 명확화 등

2. 아울러, 개정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2026. 11. 10.자 관보, 우리 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827호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련 협회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,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, 식품의약품안전처(전체)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

주무관	**이종규**	악무사무관	**연가**	마약정책과장	전결 2026. 11. 10. **문은희**
협조자					

시행 마약정책과-7799 (2026. 11. 1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/ 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805 팩스번호 043-719-2800 / jklee1984@korea.kr / 대국민 공개